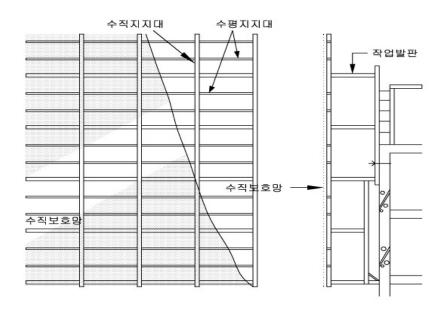
(4) 갱폼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<그림 4>와 같이 수평지지대와 수직지지대를 이용하여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4> 갱폼에 설치하는 경우(예시)

- (5) 수직보호망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서 용단, 용접 등의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난연 또는 방염성이 있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수직·수평지지대에 수직보호망 설치 또는 수직보호망과 수직보호망 사이 연결은 수직보호망의 금속고리나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테두리 부분에서 해야 하며, 고정부분은 쉽게 빠지거나 풀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7) 수직보호망을 지지대에 설치할 때 설치간격은 35cm 이하로 하고 틈새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수직보호망을 붙여서 설치하는 때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0.98 kN 이상으로서 긴결방법은 사용 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, 긴결재로 케이블 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.